#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윤준병·한병도·유동수

문정복 • 이원택 • 신영대

김주영 · 소병훈 · 서영교

안호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 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 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여기에 더해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 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 시에는 농업인에 대한 생 산원가 보장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 가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 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 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 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 신설).
- 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안 제57조제2항제2 호의3 신설).

#### 법률 제 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초로 하되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미곡에 대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미곡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

- 곡,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이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정 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대상 품목의 선정
  -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 3. 차액의 지급비율
  - 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
	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
	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
	<u>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u>
	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초로 하되 생산비
	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
	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
	<u>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
	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미곡에 대하여 농산물가격안

정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미곡 재 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미곡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곡,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 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 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 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6 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신 설>

-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대상 품목의 선정
  -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 장가격
  - 3. 차액의 지급비율
  - 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관측 및 추계
  -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 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 1. ~ 2의2. (생 략) <신 설>
- 3. ~ 5. (생략)
- ③ ~ ⑤ (생 략)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렁으로 정하는 자격기준 에 맞는 사람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 ② ------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 행
  - 3. ~ 5.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